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6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3. 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서만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2011년 이후 동결되었던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조항 삭제(안 제9조)
-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조항 등 삭제(안 제12조, 안 별지 제1호 서식 ~ 제5호 서식)
-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인상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법제처의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2011년 이후 현재 까지 동결된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1) 「하수도법」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함.
 -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.
 - 2)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일련의 집행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준용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.
 - 3)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17년 7월부터 인상하고자 함.
 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는 10ℓ 기준 14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 청소 수수료는 21,140원에서 22,300원으로, 초과분은 100ℓ당 1,490원에서 1,620원으로 인상함.
-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임.
 - 이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다가 인건비, 유류비, 물가 인상 등을 참작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
 - 수수료 인상안은 “서울특별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분석 용역” 결과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을 기해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짐.
 - 그러나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규정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하고,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민 부담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3조)
- 나. 잘못 규정된 근거조항의 정비 (안 제4조, 안 제11조)
- 다.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등의 규정 삭제 (안 제9조)
- 라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준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의 삭제 (안 제12조, 안 별지 제1호 ~ 제5호서식)
- 마.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1) 「하수도법」
- 2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- 4) 물가대책위원회 : 원안 가결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6.12.29. ~ 2017.1.18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(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제거하여야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**법 제80조제3항**”을 “**법 제80조제4항**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분뇨 수집·운반업자의 의무) 분뇨 수집·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표]의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

구 분		부 과 기 준	부 과 금 액	
분 뇨		10ℓ	<u>150원</u>	
개인 하수 처리 시설	기 본	750ℓ까지	<u>22,300원</u>	
	초 과	100ℓ당	<u>1,620원</u>	
	할증	야간 및 공휴일	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	7.0%
		지하2층 이하	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	5.0%

※ 지하할증 :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

※ 야간할증 : 야간 청소시간은 18:00부터 다음날 06:00까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정화조의 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크럼 및 침전오니(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 <u>오수처리시설의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럼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(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제거하여야 한다.</u></p>

제4조(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)

①、② (생략)

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(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)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④、⑤ (생략)

제9조(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)

①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수수료 및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1조(분뇨 수집·운반업자의 의무)

분뇨·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 직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

제4조(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)

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법 제80조 제4항-----
-----.

④、⑤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1조(분뇨 수집·운반업자의 의무)

분뇨 수집·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영 제24조

규칙 제3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 구청장이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.

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(체납부)에 기

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〈삭 제〉

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.

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.

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[별 표]

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

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	비고
분뇨	10ℓ	140원	
개인 하수	기본	750ℓ까지	21,140원
	초과	100ℓ당	1,490원
처리 시설	할증 증	야간 및 공휴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	7.0%
		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	5.0%

- ※ 지하할증 :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
- ※ 야간할증 : 야간 청소시간은 18:00부터 다음날 06:00까지

[별지 제1호서식]

[별 표]

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

구분	부과기준	부과금액
분뇨	10ℓ	150원
개인 하수	기본	750ℓ까지
	초과	100ℓ당
처리 시설	할증 증	야간 및 공휴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
		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

- ※ 지하할증 :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
- ※ 야간할증 : 야간 청소시간은 18:00부터 다음날 06:00까지

[별지 제1호서식]

<삭 제>

제 호

수 신 :

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「하수도법」 제 조 제 항의 규정 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「하수도법」 제 조 제 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첨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.

년 월 일

영 등 포 구 청 장 인

[별지 제2호서식]

[별지 제2호서식]

<삭 제>

과태료 수납부(체납)											
[조례 제12조제4항 관련]											
일련 번호	통지 서번호	과태 료처 분통 지일	독촉 장발 부일	납부 기한		금액	납부 의무자		과태 료납 부일	이의 제기	
				당 초	독 촉		성 명	주 소		이 의 제 기 일	법 원 통 보 일

[별지 제3호서식]

[별지 제3호서식]

<삭 제>

[별지 제5호서식]

제 호			
과태료 납부독촉장 [조례 제12조제6항 관련]			
납 부 의무자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			
위 반 사 항			
과태료 금액		당초납부기일	
<p>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영 등 포 구 청 장 ㉠</p>			

[별지 제5호서식]

〈삭 제〉